

수자원 특별상 포상 규칙

- 제 1 조 (목적) 수자원 특별상은 수자원 기술 발전과 수공 기술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포상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2 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수자원 특별상의 포상에만 국한한다.
- 제 3 조 (포상종별) 포상은 다음의 5종으로 한다.
1.수자원 대상 2.수자원 금상 3.수자원 은상 4.언론인상 5.저작상
- 제 4 조 (수자원 대상) 수자원 대상은 수자원 기술 발전과 수공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켜,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.
- 제 5 조 (수자원 금상) 수자원 금상은 수자원 기술 발전과 수공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켜, 전국 규모로 국민의 관심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.
- 제 6 조 (수자원 은상) 수자원 은상은 수자원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.
- 제 7 조 (언론인상) 언론인상은 수자원분야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나 특집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수자원 분야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.
- 제 8 조 (저작상) 저작상은 수자원 분야에 관한 독창적인 학술 및 기술서적을 저술하여 수자원 분야의 발전에 공헌 한 자에게 수여한다.
- 제 9 조 (심사위원회의 구성) 심사위원회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11명 내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, 심사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. 심사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제 10 조 (수상후보) ① 제 3조의 수상자 혹은 단체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거나 또는 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.
② 전항의 추천을 할 때는 수상자 혹은 기관의 업적, 공로개요 및 선정이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전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심사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 11 조 (수상자 혹은 수상단체 결정)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 혹은 수상단체를 결정한다.
- 제 12 조 (포상시기) 수자원특별상은 정기 학술발표회 혹은 정기총회에서 수여한다.
- 제 13 조 (심사수당) 제9조의 심사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8년 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